



임원 사임 공시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2항에 근거하여, 다음과 같이 임원 사임내용을 공시합니다.

직위	성명	사 임 일	사 유	비 고
공동 대표이사	신 민 기	2021. 1. 18	일신상의 사유	

토포앤코코리아 투자자문 주식회사